

안녕하십니까?

에이치앤티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4일과 5일 1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1. 1심 판결내용

아직 정식으로 판결문 송달이 되지 않는 않았지만 저희가 입수한 판결내용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피고 정국교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가 인정되었고 원고들이 에이치앤티의 주식을 거래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측의 항변들 (김석일과 한국투자연구소의 조직적 집중매수에 의해 주가가 양등한 것으로서 정국교가 책임이 없다는 항변 등)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의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감정인이 감정한 정상주가와 실제주가간의 차액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주가와 매도주가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피고측의 항변들 (한진피앤씨의 주가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항변, 비정상수익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는 항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원고별 손해액의 산정과 책임제한이었는데, 2007. 9. 18. 이전에 매수한 부분에 따른 손해액은 책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100% 인정되었고, 2007. 9. 18부터 2007. 10. 10.까지의 매수분에 따른 손해액은 2007. 9. 14. 거래소에 의해 투자주의종목으로 고시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30%를 감액하여 70%만 손해를 인정하였으며, 2007. 10. 11.부터 2007. 11. 8.까지의 매수분은 2007. 10. 1. 피고 정국교가 주식매도 사실을 공시한 것과 기자회견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50%로 손해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 11. 9.부터 2007. 11. 21.까지의 매수분에 따른 손해액은 2007. 11. 8. 양해각서 취소가 공시된 점 등을 감안하여 20%로 손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사건기간 즉 2007. 2. 27.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얻은 시세차익을 손익상계로 보아 100% 공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 관하여 자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회사 즉 에이치앤티도 사용자로서 일정한 한도에서 정국교와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2007. 2. 27.부터 같은 해 9. 17.까지 매수분은 50%, 2007. 9. 18.부터 2007. 10. 10.까지 매수분은 35%, 2007. 10. 11.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매수분은 25%, 2007. 11. 9.부터 2007. 11. 21.까지 매수분은 10%로 각 제한하였습니다.

매입시기별로 책임제한을 달리 하였고, 책임제한 후 산출된 금액에 손익상계방식으로 공제를 하였으므로 일부 원고분들(숫자상으로 약 5%에 해당하는 분들)은 인용금액이 “0”로 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일부 원고들은 청구금액의 100%가 인정되었고 나머지분들은 청구가 일부인용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정식으로 송달이 되어 오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고분들 각각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별지 1-1, 1-2와 같습니다.(이 금액은 저희가 들은 판결선고내용과 입수한 판결내용을 토대로 추정한 손해액이며 판결문 원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와 항소심 진행계획

이번 판결은 정국교와 회사의 민사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인과관계와 관련한 각종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원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취득시기를 구간별로 나누어 후반부에 취득하신 분들의 손해를 대폭 감축 인정하고 거래를 통해 이득이 발생한 액수는 100% 반영하는 바람에 일부 원고들은 배상액이 ‘0’으로 산정되었고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하여는 ‘피해 입은 것은 맞지만 배상은 없다’는 기묘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부 패소하신 원고들과 청구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 인용된 원고들 중 항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3개 재판부가 협의를 하여 내린 결론에 해당

하여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지 않음을 감안하여 일괄항소는 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희망하는 분들에 한하여, 희망하는 액수만큼만 항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따른 별도의 착수금은 받지 아니하지만 항소시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와 송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항소금액의 0.6%에 해당)은 항소하시는 원고들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피고 정국교와 에이치앤티는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항소심 인지대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원고들 별로 선별적으로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은 확정되며 어느 한 쪽이라도 항소를 하면 항소심으로 진행됩니다 (항소여부는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원·피고 어느 쪽이라도 항소를 하여 항소심재판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항소심을 계속 대리하게 되며 당초의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승소보수비율이 10%에서 13%로 상향 조정됩니다.

항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지 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오는 11월 24일까지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고 항소심인지대도 11월 24일까지 양식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꼭 원고이름으로 송금바랍니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항소를 포기하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1심 판결 집행

이번 1심판결은 가집행선고가 붙여졌으며 따라서 저희는 이미 가압류해 놓았던 정국교 명의의 예금에 대한 배당기일 참가를 시작으로 집행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정국교 명의 외환은행 예금 일부 (217억상당)에 대한 배당기일에서는 검찰 등 여러 채권자들과의 협상 등을 거쳐서 저희 사무실 원고들이 총 판결인용액(원금)의 약 37.5%에 해당하는 96억원정도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중 세무서의 이의에 따라 지급이 유보된 금액을 뺀 약 89억원정도가 금년 내로 지급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판결문정본에 따른 집행문의 부여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개별 송금액예정액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씨티은행에 있는 정국교 명의의 예금 (약 107억원)과 여타 예금 약 40여 억원, 그리고 차명예금 약 100억원에 대한 집행에도 순차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명예금에 대한 집행은 차명예금주를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바, 이는 당초 저희가 받은 포괄적 위임장을 기초로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후 한결과 공조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인지대 등 비용은 저희가 지출한 후 추후 집행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치앤티에 대한 집행도 법무법인 한결과 협의 및 회사측과의 협상을 거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1심판결에 따른 집행은 승소판결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심판결에 따른 집행은 업연히 가집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지는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문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www.hannurilaw.co.kr)의 게시판-공통된 질문-이나 마이페이지-개인적 질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 원고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항소여부에 대한 지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소 원고들께는 조만간 집행된 금원에 대한 배분계획을 다시 개별 공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 별지 1-1. 원고별 판결금액, 1-2 거래내역표
- ※ 별지 2. 항소 신청양식

2010. 11. 12.

법무법인 한 누리
변 호 사 김 주 영
변 호 사 변 환 봉

항소 신청양식

- * 이 양식은 1 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에 한하여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 * 1 심에서 전부승소를 하신 분들이나, 1 심에서 전부패소 또는 일부승소를 하였지만 항소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이 양식을 작성하신 후 저희 한누리에 우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G-five Central Plaza 431 호), 팩스 (02-564-9889) 또는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원고	주민등록번호	1 심청구금액	1 심인용금액	항소가능금액

항소희망금액		항소심비용액 (항소희망금액의 0.6%)	
--------	--	--------------------------	--

- * 항소희망금액은 항소가능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쓰시면 됩니다.
- * 항소심비용액은 항소희망금액에 0.6%을 곱한 금액입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을 희망합니다.

(다만 오는 2010. 11. 24.까지 아래 계좌로 항소심비용액을 입금한 경우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비용액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7-851219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

2010. 11. .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